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의원 · 민병덕의원 공동대표발의)

의안 번호	17987
----------	-------

발의연월일 : 2026. 3. 31.

발 의 자 : 용혜인 · 민병덕 · 이주희
정춘생 · 김승원 · 소병훈
전용기 · 김한규 · 진성준
황명선 · 황운하 · 이수진
윤종오 · 정혜경 · 백혜련
한준호 · 김현정 · 김남희
허영 의원(19인)

제안이유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함에 있어 해상풍력발전이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해상풍력 발전사업 및 발전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규정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3월 시행되었음.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계획입지의 제공, 인허가 편의, 기술·금융·세제 혜택,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우대 등 다양한 수준의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공적 자원의 크기에 비해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하고, 특히 풍력, 공유수면 등이 공

유부 성격을 지님에도 국민의 직접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도입되지 아니함.

이에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사업 참여의 조건으로 해당 해상풍력발전사업의 20% 이내 사업지분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개정안에 맞춰 공유지분 수익의 이익공유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로서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공유지분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공유지분”, “수급권”, “수급권자”, “수급자” 등 정의 규정을 둠.
(안 제2조).

다. 공유지분 이익배당 수급권의 양도, 담보제공, 압류를 금지함(안 제3조).

라. 수급자의 공유지분 이익배당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의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안 제4조).

마. 대한민국 국민, 「지방자치법」상의 주민, 영주권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수급권자로 함(안 제5조제1항).

바. 수급권자의 이익배당액을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부터 얻은 당기순이익에서 공유지분 비율을 곱한 액수를 수급권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공유지분에 따른 사업이익의 100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민, 나머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설치 지역의 주민을 수급권자로 함(안 제5조제2항).

사. 공유지분 이익배당은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조례에 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아. 공유지분 이익배당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제공, 지급 신청, 조사·질문, 미지급 이익배당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9조).

자.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지급 정지, 수급권 상실, 환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차.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유지분 이익배당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토록 하며, 기후에너지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공유지분에 따른 이익배당액을 징수하여 특별회계에 납입하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이월 및 잉여금 처리에 관해 규정함(안 제13조~18조).

카.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유지분 이익배당 수령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둠(안 제21조~제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 공유지분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지분”이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획득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일정 지분을 말한다.
2. “수급권”이란 공유지분에 따라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권리를 말한다.
3. “수급권자”란 공유지분 이익배당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자”란 수급권에 따라 공유지분 이익배당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유지분 이익배당 수급권의 보호) 공유지분 이익배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4조(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소득 산정 특례) 이 법에 따른 공유지분 이익배당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의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2장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신청 및 지급

제5조(수급권자) ① 공유지분 이익배당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지급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지방자치법」 제12조의 주민에 해당하는 자 및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이하 “실거주민”이라 한다)

② 수급권자의 공유지분 이익배당액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공유지분이 있는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부터 얻은 당기순이익에 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한 액수를 수급권자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단, 이 법에 따른 국가공유지분 이익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이익배당액은 국민에, 나머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이익배당액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민관협의회 구성에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귀속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 수급권자의 수,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이익배당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정기적으로 공유지분 이익배당액을 수급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산정, 지급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유지분 이익배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공유지분 이익배당 지급의 대상·금액 및 신청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방법·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지급 신청) ① 수급권자 또는 재정경제부

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지분 이익배당 지급 신청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조사·질문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공유지분 이익배당 지급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에게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의 발생·변경 등의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및 국민·외국인의 출입국 자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자료,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 자료, 해외이주포기신고 자료 및 영주귀국신고 자료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매장, 화장 및 장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5.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또는 공동지분 배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내용·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미지급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신청) ① 수급권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공유지분 이익배당이 있는 경우에 수급권자는 미지급된 이익배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청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수급자의 사후관리

제10조(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지급 정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해까지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4. 그 밖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유지분 이익배당 수급권의 상실)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공유지분 이익배당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공유지분 이익배당의 환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수급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공유지분 이익 배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이익배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1. 거짓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배당을 받은 경우

2. 제10조에 따라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이익배당이 지급된 경우 등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2.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공유지분 이익배당 특별회계

제13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유지분 이익배당을 위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제14조(공유지분 사업이익의 징수) 기후에너지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로부터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사업이익을 징수하여 특별회계

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1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에 따른 공유지분 사업이익 징수액
2. 그 밖의 수입금

제16조(세출) 특별회계는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지급으로 인한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공유지분 이익배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공유지분 이익배당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분 이익배당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

탁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지분 배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다음과 같이 제25호를 신설한다.

25.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